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520호

2019. 5. 16.(목)

함께
서울



제7182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6
제7183호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8
제7184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2
제7185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53
제7186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4
제7187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6
제7188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57
제7189호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59
제7190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60
제7191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62
제7192호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3
제7193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163
제7194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67
제7195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9
제7196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70
제7197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171
제719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74
제7199호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75
제720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5
제7201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80
제7202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80
제720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81
제7204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82
제7205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84
제7206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85
제7207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185

[입법예고]

제2019-134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8
제2019-1398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9
제2019-1403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8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주거지 사이의 거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청사의 점·소등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명계획 수립시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토록 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목적을 정비하여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한편, 조례에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청사의 점등·소등시간 고려사항에 주거지 사이의 거리, 지역특성을 추가함(제24조 제2항)
- 나. 조명계획 수립시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 다. 상업·공업지역에 지정되는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에 공업활동을 추가함(제6조제1항제4호)
- 라.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함(제2조제2호,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20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시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3조의2, 제4조제1항제12호다목 및 제20조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전자빔은 영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면·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3층”을 “5층”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4층 이상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로 또는 세로 어느 한 변의 폭이 문자·도형 등의 폭보다 작은 게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2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 시작하여 아랫부분은 4층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간판이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창문(개폐기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이하로”를 “이내로”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터치스크린 또는 전체화면 면적의 4분의1 이내의 화면·문자 변환은 정지화면으로 본다”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시 심의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벽면에는”을 “벽면에”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모바일로”를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하는 모바일·전자적방식 등”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26조제2항 관련)



[예시]

비고
(예시)

1. 표시규격 : 가로 5cm × 세로 5cm
2. 표시내용 : '201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제26조제3항 중 “아래부분으로부터 160센티미터 높이의 오른쪽으로 한다”를 “오른쪽 아래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래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협의·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②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허가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법령 및 조례상 정하지 않은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개별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정하고, 건물벽면을 이용한 간판설치 허용층수를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는 등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과 광고물 실명제 표시대상 및 방법에 자사광고와 전자적방식 등을 추가하는 등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을 마련함(제3조의2 신설)
나. 벽면이용간판의 허용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함(제4조제1항제1호)
다. 벽면이용간판 등의 표시방법을 보완함(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7호, 제4조제3항제2호, 제11조제2항제1호)
라. 광고물 실명제 대상에 자사광고를 추가함(제26조제1항)
마. 광고물 실명제 표시 및 인식방법을 개선·보완함(제26조제2항 및 제3항)
바. 광고물 실명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도록 함(제26조제4항 신설)
사. 광고물 실명제 서식을 추가함(별지 제2호 서식 신설)